#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454

제출년월일: 2020년 4월 3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서울 공공한옥 중 역사가옥 2개소(홍건익가옥, 배렴가옥)를 통합하여 사무 민간 위탁으로 추진해 왔으나, 정체성이 다르고 위치적으로도 상이한 2개소를 분리하여, 배렴가옥만의 정체성을 반영한 전문적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3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서울특별시 서울 공공한옥(배렴가옥) 운영지원

# 나. 위탁 개요

○ 대상시설 : 서울 북촌 배렴 가옥(등록문화재 제 85호)

○ 소 재 지 : 종로구 계동길 89(북촌 지역)

○ 시설규모 : 대지 257.9 m². 연면적 128.93 m²

○ 위탁기간 : 3년(2021.1.1. ~ 2023.12.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

○ 소요예산(안) : 269백만원 ※ '20년 예산(2개소): 500백만원

#### 다. 주요 위탁내용

- 가옥 관련 역사인물(배렴, 송석하) 생애별 전시 조성 및 운영
- 서화 전문 전시공간으로 전통서화 예술가의 전시 기획 및 운영
- 관련 예술가(단체) 교류를 위한 교육 공간 조성 및 운영
- 가옥 및 지역 해설 등 시민 서비스 응대를 위한 사무국 운영 등

# 라. 추진근거

- ○「문화재 보호법」제34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34조
- 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 분리운영 추진계획 방침('20.2.20.)

#### 마. 필요성

- '17년 5월부터 역사가옥 2개소(홍건익가옥, 배렴가옥)를 통합 하여 사무위탁으로 진행했으나, 정체성이 다른 두 가옥을 동시 관리하면서, 가옥별 특성을 살린 전문적 프로그램 기획 운영이 어려워 당초 목적한 가옥의 활용도, 공공성,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 발생
- 특히, 두 가옥의 소재지가 달라 역사가옥의 광범위한 시설 관리로 수탁기관 직원들의 업무과중 및 빈번한 로테이션 근무 등으로 운영인력 부족, 잦은 퇴사 발생 등의 사유로 민간위탁 운영기간 동안 2차례 협약해지 등 민간위탁 사업의 안정성 저해
- 역사가옥 2개소 사무 분리를 통해, 배렴가옥의 성격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운영이 가능한 전문단체에 개별 위탁 추진함 으로써 민간위탁 사업 지속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 극대화

#### 바. 기대효과

- 가옥이 소재하고 있는 마을 문화, 공동체, 지역 가치를 담은 종합적, 전문적 활용 통해 역사가옥의 공공성 및 지역기여 확대
- 적극적인 시설 운영 및 대시민 서비스 제공 통해 배렴가옥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 등 시민 만족도 제고

#### 3. 추진일정

# 가. 추진현황

- 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16.12.16.)
- 역사가옥 2개소 수탁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해지('17.5.~'19.7.)
  - 최초 위탁('17.5.1.~'20.4.30.) ※ '18.3.31.일자 협약해지
  - 1차 재위탁('18.4.1.~'21.3.31.) ※ '19.7.31.일자 협약해지
- 시의회 역사가옥 2개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19.4.22.)
- 역사가옥 2개소 민간위탁 재위탁(공모) 추진계획('19.4.29.)
- 역사가옥 2개소 수탁업체 선정 및 협약('19.7.29.)
  - 2차 재위탁('19.8.1.~'20.12.31.) ※ '21년부터 분리위탁 위해 기간 조정
- 역사가옥 2개소 사무 민간위탁 분리운영 추진계획('20.2.20.)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20.3.24. 조직담당관)

위탁사무명	유형		위탁기간	심의결과
서울 공공한옥 (배렴가옥) 운영지원	사무	신규(공모)	3년	적정

## 나. 향후계획

- 제 293회 시의회 동의안 제출 및 의결('20.4.20.~4.29.)
- 배렴가옥 수탁기관 공모, 적격자 심의위원회('20.6월~8월)
- 계약심사 및 협약체결, 위탁사무 인수인계('20.9월~11월)
- 배렴가옥 신규 수탁기관 운영('21.1월~)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문화재 보호법」제34조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34조

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시장은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서울 공공 건축자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수탁사무의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편성(예정)

**다. 합 의** : 조직담당관 심의('20.3.24.)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적정)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한옥건축자산과 건축자산문화팀 박여은(☎ 2133-5582)